

입 법 예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전문직위의 지정 등),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에 따라 전문직위 지정 인원의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한 평정 우대를 위해 해당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개정사항(2024. 1. 25. 개정) 반영 및 그 밖에 용어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인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안 제6조)

나.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선발된 인원에 근무경력 가점 부여기준 마련
(안 제25조의 3 및 별표 15조의3)

다.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별표 5의3)

라. 과장급 이상 시간선택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별표 5의3)

마. 응시원서 상의 용어 개정 등(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참조: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34139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운영지원과(전화 042-611-2167, FAX 042-611-2188, E-Mail loo8@korea.kr)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 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운영지원과 인사팀(☎611-21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며, 부여기준은 별표 15의3과 같다.

별표 5의3, 별표 15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4조제10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택 제 임 기 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 시 임 기 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자등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자등
한 시 임 기 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자등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제25조의3 관련)

가점항목	부여기준	가산점
<p>◆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p>	<p>○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전문관 경력</p>	<p>○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까지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 마다 0.05점 부여</p>
<p>◆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근무경력</p>	<p>○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p>	<p>○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까지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 마다 0.05점 부여 - 총 가산점은 최대 0.75점</p>

[별지 제3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시원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우)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수입증지 붙이는 곳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 시 분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4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등록번호		제 회 번		③ 응시연도 및 회 수		()년도 제 회	
※ 급		직		응시지구(기호) 응시번호		지구	번
① 성 명		(한글)		② 희망지역		※ 등록심사	
		(한문)		제1지역	시군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제2지역	시군	①인	①인
④ 주 소						(사진부착)	
⑤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대폰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부문·과목			
⑧ 자 격 면 허				⑨ 상 별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⑪ 비상연락처

관계	성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 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임용권자)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물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된 후보자만 제출
-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 ※ 「전자정보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 ② 회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 ⑨ 상 별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 ⑪ 비 상 연 락 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26., 2012. 4. 20., 2016. 4. 8.>

제2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8. 5., 2012. 4. 20., 2015. 9. 4.>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위원 1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회의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밖에 안건 심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5. 9. 4.]

제3조의2삭 제 <2015. 9. 4.>

제3조의3(인사위원회 사무직원)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

1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서기는 인사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8., 2019. 3. 12.>

[본조신설 2015. 9. 4.]

제4조 삭제 <1995. 9. 15.>

제5조 삭제 <2014. 11. 19.>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

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8. 5., 2014. 11. 19., 2018. 12. 28., 2020. 12. 30.>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8. 5., 2012. 4. 20., 2014. 11. 19., 2020. 12. 30.>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4.>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삭제 <2015. 9. 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2.04.20., 개정 2017.5.31., 2022.11.25., 2023.10.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3. 10. 27.>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3. 10. 27.>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3. 10. 27.>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96. 8. 1., 1998. 4. 10., 1999. 12. 3., 2006. 5. 26., 2012. 4. 20., 2014. 11. 19., 2016. 4. 8., 2017. 5. 31.>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신설 1996.08.01, 개정 2004.12.17, 2012.04.20., 2022.11.25.>

③ 영 제59조에 따라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1998.04.10, 개정 2012.04.20>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 12. 26., 2018. 1. 2. 28., 2023. 2. 6.>

1. 삭제 <2023. 2. 6.>

2. 삭제 <2023. 2. 6.>

[전문개정 2004. 12. 17.]

제9조 삭제 <2011. 8. 5.>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 9. 15., 2011. 8. 5.>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 9. 15., 2011. 8. 5., 2012. 4. 20.>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1996.02.23, 개정 2012.04.20, 2018.12.28.>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이·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6.02.23., 2011.08.05., 2102.04.20.>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

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23., 2011. 8. 5.>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소집해제예정일을 말한다)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로 기산한다. <개정 1998. 4. 10., 1999. 10. 29., 2006. 5. 26., 2008. 12. 26., 2011. 8. 5., 2016. 4. 8., 2017. 5. 31., 2018. 12. 28.>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9. 15., 2012. 4. 20., 2016. 4. 8., 2017. 5. 31.>

② 영 제16조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 4. 20., 2013. 9. 13., 2015. 9. 4.>

③ 영 제16조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20., 2013. 9. 13., 2015. 9. 4.>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

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4.8., 개정 2023. 10.27.>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5.>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8. 12. 28.>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8. 12. 28.>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8. 12. 28.>

②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
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
함한다.] <개정 2012. 4. 20., 2018. 12. 28.>

[본조신설 2004.12.17]

제13조 삭제 <2013. 9. 13.>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개정 2014. 11. 19.>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 별
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신설 2014. 11. 19., 2017. 5. 31.>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

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4.12.17., 2012.04.20., 2016.4.8. 번호이동 2014.11.19.>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시험위원회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6. 5. 26.>

[본조신설 1995. 9. 15.]<개정 2011.08.05., 2012.04.20., 번호이동 2014.11. 19., 2015.09.04.>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0분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면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0분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30.]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1995. 3. 29., 2009. 6. 26.> <2010. 1. 22., 2012. 4. 20., 2012. 9. 14., 2014. 11. 19.>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

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

으로 한다. <개정 1996. 8. 1., 2011. 8. 5., 2012. 4. 20., 2014. 11. 19., 2016.

4. 8., 2018. 12. 28.>

③ 삭제 <1995. 3. 29.>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

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 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1996. 8. 1., 1998. 10. 30., 2000. 4. 28., 2006. 5. 26., 2009. 6. 26.,

2011. 8. 5., 2012. 4. 20., 2014. 11. 19.>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 그 선발 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26., 2011. 8. 5., 2012. 4. 20., 2018. 12. 28.>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 4. 20., 2012. 9. 14., 2018. 12. 28.>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11.08.05., 2012.04.20., 단서삭제 2014.11.19.>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4. 28., 2004. 12. 17., 2014. 11. 19.>

출신 학 력 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 학 졸 업 자	6급·7급·연구사
전 문 대 학 졸 업 자	7급·8급·지도사
고 등 학 교 졸 업 자	9급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 4. 10., 2009. 6. 26., 2011. 8. 5., 2012. 4. 20., 2012. 9. 14., 2014. 11. 19., 2020. 12. 30., 2022. 11. 25.>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 6. 26., 2011. 8. 5., 2012. 4. 20.>

⑧ 삭제 <2004. 12. 17.>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17., 2006. 5. 26., 2011. 8. 5., 2012. 4. 20.>

⑩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14. 11. 19., 2017. 5. 31.]

⑪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 11.

19.>

[제목개정 2017. 5. 31.]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

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

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의 사실

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3. 10. 27.]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 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신설 1999.10.29, 개정 2011.08.05, 2012.04.20>

③ 삭제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제15조의2(특수한 직무분야·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5. 26., 2009. 6. 26., 2012. 4. 20., 2018. 12. 28.>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개정 2013. 9. 13., 2014. 11. 19.>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4. 11. 19., 2016. 4. 8.>

② 삭제 <2014. 11. 19.>

제16조 삭제 <1995. 9. 15.>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5. 3. 29.>

[전문개정 2011. 8. 5.]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11. 8. 5.] [개정 2012. 4. 20.]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09. 6. 26.>

[전문개정 2011. 8. 5.] [개정 2012. 4. 20.]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11. 8. 5.]

⑤ 삭제 <2018. 12. 28.>

⑥ 삭제 <2018. 12. 28.>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합격자 등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붙여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5., 2006. 5. 26., 2011. 8. 5., 2012. 4. 20., 2016. 4. 8., 2018. 12. 28.>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③ 삭제 <2017. 5. 31.>

[제목개정 2014. 11. 19.]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

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 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1. 8. 5.>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8. 12. 28.>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데에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1. 8. 5., 2018. 12. 28.>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8. 12. 28.>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18. 12. 28.>
3. 병역을 필한 사람 <개정 2018. 12. 28.>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6. 5. 26., 2011. 8. 5., 2012. 4. 20., 2016. 4. 8.>

제21조 삭제 <1993. 2. 7.>

제22조 삭제 <1995. 9. 15.>

제22조의2삭 제 <1999. 12. 3.>

제23조(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1996. 8. 1., 2000. 4. 28., 2011. 8. 5., 2012. 4. 20., 2014. 11. 19., 2018. 12. 28.>

1.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 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 <신설 2012. 4. 20.>
2.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 <신설 2012. 4. 20.> <개정 2014. 1

1. 19.>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 8. 5.>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08.05., 전문개정 2020.12.30.>

제24조(연구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

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9., 2011. 8. 5., 2014. 11. 19., 2018. 12. 28., 2020. 12. 30.>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0. 19.> <개정 2011. 8. 5., 2012. 4. 20., 2014. 11. 19., 2016. 4. 8., 2018. 12. 28.>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에

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

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 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 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신설 2020. 12. 30.]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20. 12. 30.>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

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본조신설 1998. 4. 10.] [개정 2010. 1. 22., 2012. 4. 20.]

제25조의2(자격증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가산점대상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1. 8. 5., 2012. 4. 20., 2017. 5. 31., 2020. 12. 30.>

② 삭제 <2020. 12. 30.>

제25조의3(근무경력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전문직 위에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며, 부여기준은 별표 15의3과 같다.

②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며, 부여기준 및 한도 등은 별표 15의3과 같다.

③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7.]

[중전 제25조의3은 제25조의4로 이동 2023. 10. 27.]

제25조의4(실적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의 기준 부여 기준은 별표 15의4과 같다. <개정 2023. 10. 27.>

② 평정규칙 제25조의2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합산하는 실적 가산점

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총 가산점은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은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12. 30.]

[종전 제25조의3은 제25조의4로 이동 2020. 12. 30.]

[제25조의3에서 이동 2023. 10. 27.]

[종전 제25조의4은 제25조의5로 이동 2023. 10. 27.]

제25조의5(다면평가) ① 승진,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상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 제8조의4에 따라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5.]

② 다면평가는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5.]

③ 평가단 구성 및 평가항목 설정 등 다면평가방식은 평가목적과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5.]

④ 삭제 <2011. 8. 5.>

⑤ 삭제 <2011. 8. 5.>

⑥ 삭제 <2011. 8. 5.>

[제25조의3에서 이동 2020. 12. 30.]

[제25조의4에서 이동 2023. 10. 27.]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규

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1995. 9. 15., 2008. 12. 26., 2011. 8. 5., 2014. 11. 19.>

제26조의2(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사업소 및 동 등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 3. 14., 2015. 9. 4., 2020. 12. 20.>

② 삭제 <2020. 12. 30.>

제26조의3(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0. 1. 22.>

제26조의4(순환보직)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보직함 있어 개인의 능력 및 적성과 각 직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보직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15. 9. 4.]

제27조 삭제 <2015. 9. 4.>

제2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신설 2014.11.19.,개정 2016.4.8.>